경제관계장관회의
13

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

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

2013. 10. 30.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Ⅰ. 추진 배경 ····· 1

Ⅱ. 현황 및 평가 ····· 2

Ⅲ. 전주기적 재도전 지원체계 구축방안 ····· 5

1. 창업 단계 ····· 6

2. 성장 및 회생 단계 ····· 8

3. 퇴출 및 재창업 단계 ····· 13

4. 관련 인프라 확충 ····· 16

Ⅳ. 향후 계획 ····· 18

Ⅰ. 추진 배경

우수인력의 도전적 벤처창업을 기반으로 하는 **창조경제**는 '**원활한 재도전 환경**'을 토대로 하는 **선순환 기업생태계**에서 구현 가능

* 성공보다 실패가능성이 높은 창업 속성상 **재도전이 어려우면 창업 자체가 위축**

□ 그간 정부는 **실패기업인 재기지원 제도들을 도입·시행**해왔으며, 최근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대책* 등 **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에 노력**

* 투자 중심 창업자금 조달, 벤처·창업 인프라 확충, 재도전 자금지원 강화 등

○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**우수 인력의 창업 기피***와 **재도전 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****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

* 벤처기업 석·박사 창업비율(%) : ('09) 31.7 → ('10) 28.6 → ('12) 26.3

** 사회적 편견 및 부실책임 우려에 따른 소극적 지원, 차별적 제도·관행 등

□ 최근 고조된 창업 열기*가 우수인력의 도전적 벤처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**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창업생태계 환류 지원을 강화**할 필요

* 신설법인 추이(1~8월 누계) : ('08) 36,081 → ('11) 43,189 → ('13) 51,151

○ 아울러, 저성장 장기화로 **경영환경이 악화**되고 있어 **중소기업 부실 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필요성 증가**

*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(한은) : ('10) 6.7% → ('11) 5.6% → ('12) 5.1%

◇ '**창업실패 부담 완화→기업실패 최소화 지원→재창업 성공률 제고**' 등으로 이어지는 '**전주기적 재도전 지원체계**'를 구축하여

◇ **우수인력의 벤처·창업 유입**과 **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을 촉진**함으로써 "**선순환 기업생태계**" **조성을 완결**

Ⅱ. 현황 및 평가

1 실패기업 및 실패기업인 현황

□ (기업) 최근 5년간 **총 25.6만개의 법인기업이 폐업**한 가운데, **창업기업 2곳 중 1곳은 3년 이내 폐업**

< 최근 5년간 사업자 폐업 현황(국세청, 만명) >

전 체	법인사업자	일반사업자	간이사업자	면세사업자
433.5	25.6	205.8	159.9	41.4

* 창업기업 생존율('12. 중기청, 1000개 기업 조사) : (1년차) 84% → (3년차) 55% → (5년차) 39% → (7년차) 30% → (10년차) 24%

○ **중소기업의 1/3이상**이 **부실징후기업***이고, **한계기업****의 **60% 이상**이 **잠재적인 실패기업으로 시장에서 생존** (한은)

* 이자보상비율 100%미만 중소기업 추이 : ('10) 32.9% → ('11) 33.3% → **('12) 37%**

** 한계기업(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00%미만 또는 영업활동현금흐름 마이너스) 실태조사('03~'10년, 1,381개사) : 정상화 27.4%, 폐업 9.7%, 시장내 생존 62.9%

□ (기업인) 폐업기업 평균 부채는 **약 8.8억원 수준**이며, **대표자의 75%가 연대보증**을 서고 있어 **폐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로 전락**

* 재기중소기업개발원(민간 실패기업인 지원기관) 설문조사 결과('13.5)

- 폐업시 부채 : **평균 8.8억원**(미지불금 51%, 차입금 55%, 세금체납 51%, 기타 38%)
- 대표자 연대보증 : 없음 25%, 본인 19%, 본인+가족 47%, 본인+가족+지인 9%

○ 신용불량에 따른 **금융거래 중단 및 사업상 각종 불이익**과 극심한 생활고로 인한 **가족해체 등 불행의 악순환 → '재기의지 상실'**

* 부도이후 기업인 생활유형(부도기업인재기협회) :
단순 일용·노무직 60%, 폐인·노숙자 20%, 재기 준비 19%

2 그간의 개선 노력 및 평가

□ 그간 정부에서는 벤처·창업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**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들***을 도입해 시행

* 벤처패자부활제('05), 재창업자금 지원제도('10), 재창업지원위원회('12) 등

○ 또한, **신·기보 등 정책금융기관**을 중심으로 **연대보증제도**를 **지속 개선***

* 우수벤처기업 연대보증 면제제도 신설('05),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로 입보대상 범위 축소('08), 기술력 우수 투자유치기업 입보 면제('10)

□ 최근에는 **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개편**(**융자 중심→투자 중심**)* 등을 통한 **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**(국정과제)에 노력 중

* '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('13.5)

○ 아울러 재도전에 따르는 **자금지원을 강화**하고, 신용불량의 사전적 예방* 및 **신속한 신용회복 여건****을 조성

* 은행권('12.5) 및 제2금융권('13.7) 연대보증 개선·시행
** 은행연합회의 회생기업 관련인 정보 등록기간 단축('13.9)

□ 이러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**전주기적 관점에서의 접근 부재로 우수인력 창업 등 정책성과 부족**

○ **엄격한 대상요건** 등 기업의 **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 설계** 등이 **제도 활성화를 저해***

* 실패 벤처기업인에 보증을 지원하는 **'벤처패자부활제'**는 엄격한 도덕성 평가 등 까다로운 요건으로 **시행 7년('05~'12)간 수혜자가 4명에 그침**

○ 또한, 부실예방 등 **실패를 최소화**하기 위한 **사전적 정책 노력이 부족하고, 신속한 재도전 지원을 위한 절차도 미흡**

3 재도전 저해요인

1 여전히 높은 창업실패 부담

○ **경제적 부담 : 창업자 연대보증 책임에 따른 신용불량 전락**

- **금융거래·재산·생활상 각종 불이익***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제한

* 당좌예금 개설 금지, 사용 중인 계좌 해지,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금지, 급여 및 퇴직금 가압류, 취업 제약, 비자 발급 제약 등

○ **심리적 부담 : 실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및 차별**

- 많은 실패기업인들이 사업실패 이후 **경제적 범법자 및 사회적 낙오자로 낙인**찍혀, 자존감을 상실하고 **정상적 사회생활 곤란**

2 실패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관심 부족

○ 우리의 기업구조조정은 회복이 **불가능할 때까지 부실이 악화**된 이후에야 금융권·법원 등 **외부기관에 의해 추진***

* 구조조정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시장의 낙인효과로 부실은폐 등 '도덕적 해이' 만연

○ 중소기업 체질 개선을 위해 **'건강관리시스템'을 운영 중**이나, **부실징후의 치유에는 한계**

3 제도간 연계 및 시너지 효과 미흡

○ **재창업-창업 지원제도간 연계 부족**으로 재창업기업의 **성공적 정착에 필요한 패키지식 지원 미흡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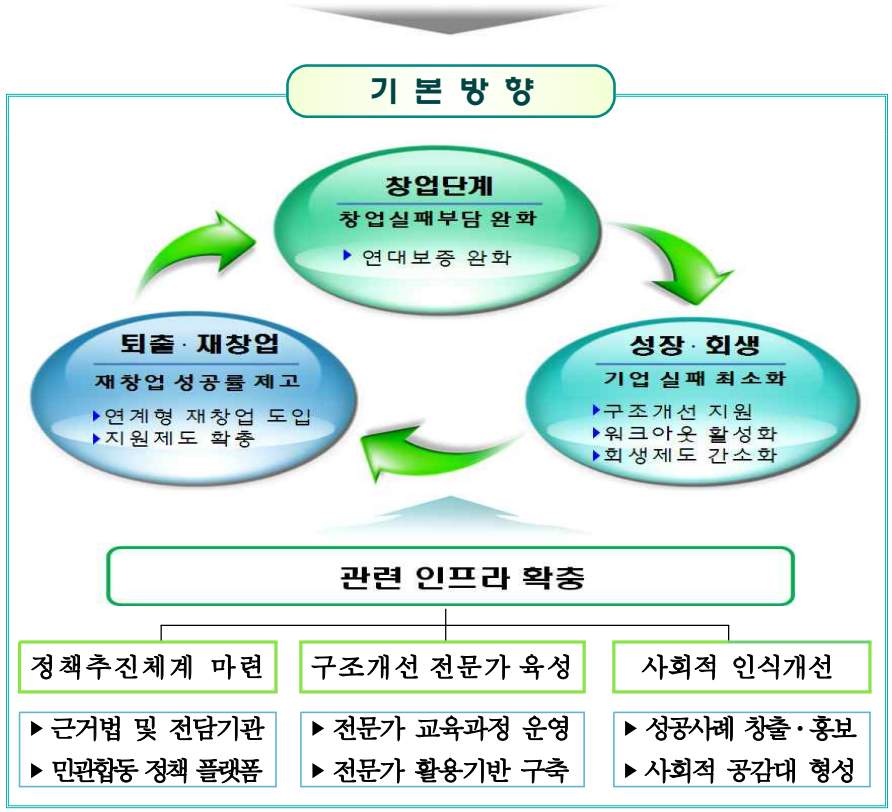
* 신용불량 또는 세금체납 사유가 있는 재도전 기업인들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(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등)에 참여 곤란(제도 개선 중)

○ 재도전 지원에 대한 **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이 미흡**하여, 금융권·공익재단·사회단체 등 **민간 영역으로 확산되지 못함**

Ⅲ. 전주기적 재도전 지원체계 구축방안

'창업 → 성장 → 회생 → 퇴출 → 재창업'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재도전 지원체계 구축

* EU도 '사회적 인식 개선 → 조기경보 및 예방체계 정비 → 파산절차 개혁 → 재창업 지원' 등 **포괄적 재도전 정책(Second Chance Policy) 마련** ('08)



창업실패 부담 해소로 우수인력의 도전적 창업을 활성화하고, 실패최소화를 통한 성장 지원으로 기업성장사다리 구축에 기여

1 창업단계 : 실패부담 완화

창업 실패의 최대 부담요인인 『연대보증에 따른 신용불량자 전락』 위험을 사전적·사후적으로 완화

1 현황 및 문제점

□ **연대보증제도 개선**으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부담이 대폭 경감되었으나, 대표이사 등 **실제경영자의 연대보증책임은 존속**

○ 창업 실패시 **기업인에게 채무가 전가**되고 **신용불량자로 전락**할 수 있어 **우수인력의 창업의욕을 저해***

* 대학생 창업관련 설문조사(창조경제연구회, '13.7) : (신용불량 위험 감수 창업 의사) 10.5%, (신용불량 위험 제거시 창업 의사) 69.4%

□ **정책금융기관**을 통해 **연대보증 입보를 면제하는 특례제도***를 시행 중이나, **활용 실적이 크게 저조**

* 우수·투자유치 벤처 연대보증 면제(기보), 가산금리부 연대보증 면제(중진공)

○ **지나치게 높은 특례제도 지원 문턱**과 **소극적 현장관행** 등이 **제도 활성화를 저해**

- **다중채무 상태가 아닌*** **초기창업기업**이 제도의 수요층이나, 이들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**엄격한 요건**** **적용**

* **다중채무기업 旣연대입보자**의 경우 일부 채무의 입보 면제에 따른 **실익 미미**
** 지나치게 **높은 기업평가등급** 또는 **대표자 지분 분산(30% 미만)** 요구

<정책금융기관별 연대보증 특례제도 현황>

구 분		대 상	비 고	실 적
중진공	가산금리부 면제제도	기업평가등급 SB 이상	가산금리 (0.4~0.6%p)	9개사 ('12.3 시행)
기 보	우수벤처 면제제도	기술평가 A등급 또는 재무 AA등급 이상	투명경영 이행약정	10개사 ('05.1 시행)

2 개 선 방 안

□ 단계적인 '창업자 연대보증 면제' 확산 (사전적 완화)

○ **1단계** (연내) : **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 대상 확대** (중진공)

- **창업기업지원자금**('13. 1조 5,300억원)의 **연대보증 면제 기업평가 등급 완화**

< 중진공 창업기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 대상 >

구 분		현 행		개 선
면제대상	기업평가등급	SB(4등급) 이상	➡	SB⁻(5등급) 이상
	업체수*(비중)	236개사(6.3%)	➡	2,028개사(53.8%)

* '13.9월말 집행 기준

- 면제대상 창업기업이 **제도를 활용**할 수 있도록 **현장홍보를 강화하고 분기별로 실적 점검**

○ **2단계** ('14년) : **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기관의 연대보증 면제**

- **일정등급 이상 우수 기술력**과 **건전한 기업가정신**을 보유한 **창업기업**에 대해 **창업자 본인의 연대보증 면제** (기보)

※ 지원대상 및 방식, 도덕적해이 예방 등 구체적 방안은 '13년말까지 마련

○ **3단계** ('15년~) : **1·2단계 성과를 기반으로 연대보증 면제 확산**

-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**창업 활성화 및 자금조달 공급 정도, 기타 도덕적 해이 문제** 등을 보아가며 **적용 범위 확대 추진**

□ **채무조정 등을 통한 연대보증 부담 완화** (사후적 완화)

○ **청년창업 성실실패자**에 대해 **연대보증 채무를 감면**하는 **'융자상환금 조정형' 창업자금**('13. 800억원) **확대 운영** (중진공)

○ **불필요한 채권보전조치를 최소화***하여 **중소기업의 경제적·심리적 부담 완화** (신·기보)

* 보증기관 「채무조정요령」 개정 등을 통한 채무액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채권보전조치 규정

2 성장 및 회생 단계 : 실패 최소화

2-1 건강진단기반 구조개선 지원시스템 구축

부실징후 중소기업의 성공적 부실치유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**심층진단 신설, 연계지원사업 확충** 등 **건강관리시스템 기능 강화**

1 현황 및 문제점

□ **금융권의 '기업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'**이 운영되고 있으나, **중소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 추진**은 **여전히 어려운 상황**

○ **재무중심 부실징후 관리***로 **산업환경적 부실위험**** **파악이 곤란**하고, **추가 부실 우려** 등으로 **신규여신 지원도 제한적**

* 재무상황 악화기업에 대한 기업신용위험 평가로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
** 신상품 출현(피처폰→스마트폰), 가치사슬 경쟁, 거래관계악화, 과당경쟁 등

□ **중소기업의 체질개선 지원**을 위해 **「기업건강 관리시스템」을 운영** 중이나 **부실 차단 및 구조개선 지원에는 부적합***

* 심층진단 곤란(진단일수 최대 3MD), 금융권 연계부재, 연계형 지원사업 부족 등

< 건강관리시스템 프로세스 >

I) 기업건강 진단	II) 처방전 발급	III) 맞춤형 치유
• **위기관리역량진단** • 기업경영전반 분석 (기술·경영전문가)	• 종합 진단보고서 작성 • **성장로드맵·처방전 작성** (진 단 기 관)	• 자금, 보증, R&D, 마케팅 • 공정혁신, 사업전환 등 (지 원 기 관)

2 개 선 방 안

□ **「구조개선 심층진단 및 지원 절차」 신설** (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)

○ **(대상) 은행권 단독 지원이 어려운 부실징후 중소기업 중심**

금융채무	추 천 대 상
30억~500억원	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 **패스트트랙 프로그램 또는 워크아웃 대상**으로 분류된 중소기업*
30억 미만	**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대상 중소기업**** 등

* '채권금융기관협의회' 또는 'Fast-Track 프로그램 협의회'의 의결을 거쳐 추천
** 中企 프리워크아웃 현황('12년, 개) : (기업) 160, (국민) 80, (신한) 142

○ **(절차) 주채권은행 추천 → 진단 신청*** → **구조개선 심층진단** (최대 9MD) → **관계기관 심의·처방 → 구조개선 실행 지원**

* 관할 지방중기청, 중진공 지역본부, 신보 영업점, 기보 기술평가센터 중 하나에 신청

○ **(심층진단) 전문가 진단 및 진단기관 평가**를 토대로 **관계기관 협의**를 통해 **구조개선 방향*을 설정**하고 **세부전략 및 로드맵 제시**

* **구조개선**, **사업전환**(경쟁력저하 업종 축소·폐지), **사업정리** 등

○ **(처방 및 실행지원) 심층진단 결과**를 토대로 작성된 **처방전을 주채권은행 등의 의견 청취** 후 심의·의결(**지역건강관리위원회**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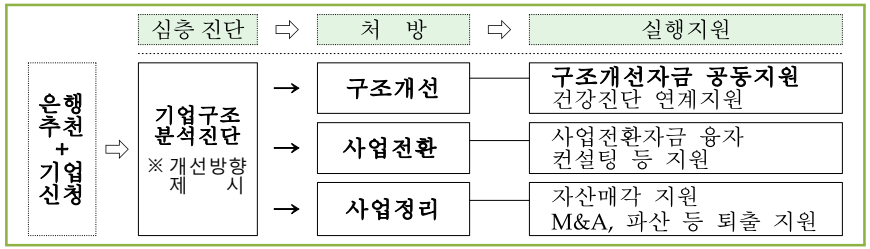
- **(구조개선 처방) 구조개선자금 공동지원*** 및 **기술개발·마케팅 등 건강진단 연계지원** 제공 (필요시)

*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**기업·정책자금·채권은행(2:3:5)이 분담** (정책금융기관-6대 시중은행간 관련 MOU 체결, 10.25)

- **(사업전환 처방) 사업전환 지원자금**(융자)·**컨설팅 등 패키지식 지원**

- **(사업정리 처방) 자산매각 지원, M&A·파산** 등을 통한 **신속퇴출 유도**

< 부실중소기업 구조개선 심층진단 프로세스 >



2 연계지원사업 확충

○ **기업건강진단 연계형 중소기업 지원사업**을 **단계적으로 확대***

* (1단계) 중기청 지원사업 전반으로 확대 → (2단계) 타부처 확대

- 아울러, **부실징후 조기 발견**을 위해 중기지원사업 평가 시 **건강진단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**

○ **사업전환 지원제도의 구조개선 지원기능 신설**

- 사업전환 **지원대상 확대** 및 **성과지향적 구조개선 목표** 설정

구 분	현 행		추 가
지원대상	경쟁력 저하 업종 축소·폐지 이후 새로운 업종 진출	⇨	**경쟁력 저하 기업의 '자발적 구조개선에 필요한 사항'**
구조개선 목표	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기준 30% 이상 **업종전환 또는 업종추가 여부만 제시**	⇨	**구체적인 구조개선 목표 제시** * 예시 : ROE 2%p 향상, 자산회전율 2%p 향상 등

- 자금·컨설팅 등 **구조개선 지원시책 확충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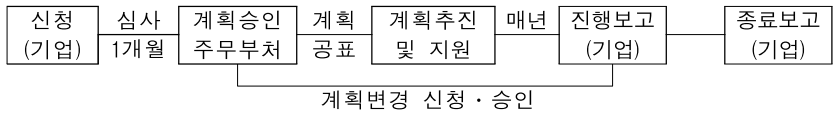
* 예시 : (자금) 사업전환지원자금, 긴급경영안정자금 등
(컨설팅) 사업전환 컨설팅, 건강진단 연계 공정혁신 컨설팅 등

< 참고: 일본 산업재생특별법 >

◇ **(내용)** M&A 등 기업의 **사업재생계획을 주무부처가 심사·승인**하고, 기업에게 **세제·금융·회사법상 절차 간소화** 등 패키지 지원

* 불황극복 및 산업활력을 위해 한시법 제정('99) 후 연장 ('03.3.→'08.8.→'16.3限)

< 지원 절차 >



※ **(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)** 우수자원 있으나 경영이 부진한 중기 대상으로 경영개선 및 **사업재생계획 수립 지원**(회계사, 변호사 등 전문가 참여)

◇ **(중소기업 재생사업)** 중소기업이 **'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계획'을 작성하고 계획을 인정**받으면 다양한 혜택 제공

① 제2회사가 영업상 인허가를 재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, **이전 회사의 사업 인·허가 승계**

② 제2회사를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, 등록에 따른 **등록면허세**, 부동산 이전에 따른 **취·등록세 감면**

③ 제2회사가 사업승계를 받기 위해 추가적인 신규 자금 필요시, 일본정책금융공고의 **융자제도**, 신용보험법의 **보증 활용 가능**

2-2 은행의 워크아웃 기업 지원 활성화

자산 건전성 분류 상향 허용, 회생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 인정을 통해 **은행의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대출 활성화 기반 조성**

1 현황 및 문제점

□ 유동성 위기를 겪는 **워크아웃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**를 위해서는 **신규자금 지원이 매우 중요**

○ 반면, 은행은 **건전성 분류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 우려** 등으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**신규여신 지원에 소극적**

□ 또한, **기업회생 신청시** 워크아웃 신규여신의 **우선변제권이 상실*** 되어 채권을 보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**신규여신 지원을 저해**

* 통합도산법(179조)은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에 워크아웃 신규여신 불포함

2 개 선 방 안

□ **워크아웃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여신 확대 근거 마련**

○ **정상화 가능성**이 높은 워크아웃 기업*에 대해서는 은행이 건전성 분류를 상향(고정이하→요주의 이상)할 수 있도록 개선('13.10. 예고)

* **워크아웃 기업이 출자전환 등**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거나, **재조정된 채무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**하는 기업

- 은행 **건전성 분류 상향 시 은행 부실채권 비율 하락**에 따른 **신인도 제고**로 **신규 여신 확대 가능**

□ **워크아웃 신규여신**에 대한 **회생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 인정 검토** (도산법개정위원회 중소기업 회생제도 개선방안)

* 프랑스 상법(L611-11)은 사적 조정절차에서 **법원의 승인을 받은 계약서에 따라 이루어진 신용공여 채권**에 대해서는 우선권 부여

2-3 중소기업 회생제도 유연화/간소화

1 현황 및 문제점

□ 자산·부채 규모와 이해관계인이 적은 **중소기업에게 現 기업회생 절차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과다한 비용 소요**

* 회생절차 장기화시 **자금 소진, 거래단절** 등으로 **회생가능한 기업도 도산**

○ 통합도산법상 **중소기업 채무자에 관한 특칙 규정***이 존재하나, **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절차 제공에는 미흡**

* 채권자협의회 구성 불요,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연장 제한, 관리인 불선임 등

○ **법원**(서울지법 파산부)이 '11년 도입한 **'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'**는 **대기업에는 성과***를 거두고 있으나 **중소기업에 대한 성과는 부진****

* 절차개시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기간이 **평균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**
** 사전협상에 대한 채권자 관심 부족, 조사위원 선임에 필요한 자금 부족

2 개 선 방 안

□ **중소기업을 위한 '신속회생절차' 도입** (법률상 특칙 규정 신설)

○ 회생계획 작성 명령제도 폐지*, 제1회 관계인집회 생략 등을 통해, **회생절차 소요기간 대폭 단축**

*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부터 채권신고 만료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, 추후 변제채권 총액이 정해진 후 계획안 보완

< 신속회생절차 예상 소요기간 >

절차단계		개시신청~개시결정	개시결정~회생계획인가
평균소요기간	일반절차	34일	8.6개월
	신속절차	7~14일	3.3~4개월

* 자료 : 중소기업 회생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('13. 법무부-중기청 공동)

□ 파산법원에서 **중소기업 회생컨설팅*** **수혜기업**에게는 **원칙적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**

*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전문가상담 및 절차 대행 등 지원

3 퇴출 및 재창업 단계 : 성공률 제고

3-1 연계형 재창업 지원시스템 도입

창업과 재창업 지원제도간, 재도전기업인과 청년창업자간 연계 강화를 통해 재창업 성공률 제고

1 현황 및 문제점

□ 재창업자금 확대,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신규 도입 등 **지원시책이 양적으로 확대***되고 있으나, **정책간 협업 부족으로 실효성이 미흡**

* 재창업 자금 : 200억('10) → 400억('13), 재창업 전용 R&D : 25억('13 도입)

○ 창업자에 대해서는 패키지형 창업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반면, **재창업자에 대한 연계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**

□ 재도전 기업인 및 청년 창업자간 **연계가 미흡해 유사 실패 반복**

○ **재도전 기업인은 신선한 아이디어를 접할 기회가 부족**하고, **청년 창업자는 실패 경험과 극복 노하우 학습 곤란**

2 개 선 방 안

□ 힐링캠프式 재기교육을 보완하여, 신용관리교육부터 창업사업화, 투·융자까지 **재창업의 全과정을 연계해 일괄 지원**

① **(창업 교육) 기업가센터***('14년 도입)를 활용, 재도전 기업인의 신용관리와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**재창업 아카데미**(2개월 과정) **신설**

* 기업가센터('14. 10개소 설립추진 목표) 중 2개소를 재창업 특화 센터로 지정

- **재기교육 수료생을 대상**으로 조기신용회복을 돕고, 창업모델 개발 및 모의창업을 통해 **재창업 역량 강화** (100명)

② **(창업 사업화 지원)** 재창업 아카데미 우수 수료자(30명)의 사업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**재창업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 시범 도입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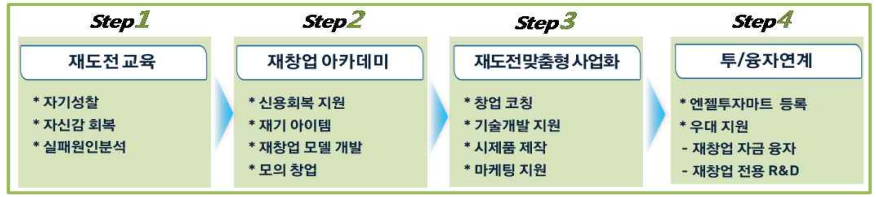
-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지원* (최대 5천만원까지 출연 지원)

* 창업 맞춤형 사업화 예산('13. 500억원)과 성과가 검증된 선도대학 활용

③ **(투·융자 지원)** 사업화 과정 수료자에 대해 **재창업자금 융자 및 전용 R&D 신청시 우대***하고, **재창업 엔젤투자마트 개최**

* 예) 신용대출 가능 기업평가등급 1단계 완화, 가점 부여 등

< 연계형 재창업 지원시스템 개요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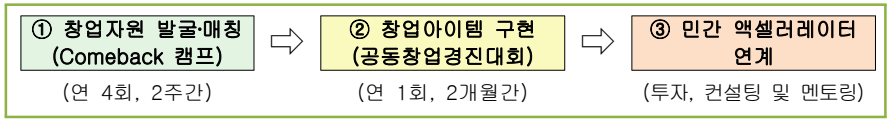
□ **재도전기업인**(경험·노하우)과 **청년인재**(아이디어·기술)의 **공동창업의 場**을 마련하고, **우수팀은 민간 창업지원 기관의 연계 지원**

① **모의 공동창업팀**(5명 이내, 총 20개팀)을 구성하여 팀별 **창업 아이템 구상·발표**를 통해 **정보 교류 및 공동창업 기회를 모색**

② 공동창업팀을 대상으로 **기술기반 창업 시제품 콘테스트를 개최해 우수 창업팀* 및 아이템 선정**

* 최종우승팀(5개)은 상금 3천만원 및 공동창업 패키지형 R&D 사업 우대

③ **민간 액셀러레이터**와의 연계를 통해 인력, 자금, 마케팅, 기술 등에 대한 **종합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**



3-2 재도전 지원 제도 확충

1 현황 및 문제점

□ **기업부실 과정**에서 기업인들은 분식회계 등 **기회주의적 유혹에 노출**되어 **재기의 기회를 상실 ⇒ 성실실패에 대한 우대 필요**

□ 재창업 기업에 대한 **차별적 제도*와 관행**으로 **초기 사업정착에 어려움 ⇒ 제도 개선**과 함께 **한시적인 전용지원사업 운용 필요**

* 예) 세금체납 및 신용정보 등록 기업 → 정부R&D 지원사업 배제 등

□ 기술, 경영경험, 해외 네트워크 등 **기업인의 역량이 기업 실패와 함께 사장 ⇒ 재도전 기업인 보유역량의 자산화 필요**

2 개 선 방 안

□ **성실실패 기업인**을 우대지원하는 **『재도전 패스트트랙』 구축**

○ **사업정리**(신속파산) → **신용회복**(사적 채무재조정 지원) → **재창업 지원**(도덕성 평가 면제) 등 **재도전 절차 전반에서 우대**하는 방안 검토

* 연구용역 추진 ('13. 말) → 구체적 대안마련 ('14. 상반기)

□ **제도·관행 개선** 및 **재도전 전용지원사업 확충**

○ **'재도전 걸림돌 제거 TF' 구성·운영** ('13. 하~)

* 기술개발사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신청자격 완화(세금체납 및 회생인가 기업 등)

○ 재창업기업 **전용 기술개발자금 확대 추진**('14년 중기청 30억, 미래부 20억)

□ **재도전 기업인 활용 강화** 및 **실패경험 교육자산화**

○ **'벤처1세대 멘토단'**을 ICT 전문인력인 **벤처2·3세대까지 확대**

* **기업가정신교육** 등을 실시하여 **전문 컨설턴트**로 육성, **멘토링 Pool에 편입**

○ 재도전 기업인을 **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*의 전문강사로 영입**

* 대학연구센터, IT명품인재양성, SW마에스트로과정 등

4 관련 인프라 확충 : 제도적 기반 마련

재도전 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① 법과 조직 확충, ② 구조조정 전문가 도입, ③ 실패 및 재도전에 대한 인식개선

4-1 재도전 정책 추진체계 마련

□ 현행 「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을 **「(가칭)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재도전 촉진법」으로 전면 개정**

○ **개별기업** 위주의 **'사업전환'** 지원 → **기업생태계** 중심의 **'구조개선 및 재도전 활성화'**를 위한 대상 범위 및 지원수단 강화*

*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, 구조개선전문가 도입, 재도전 지원 근거 확충 등

○ (일정) 개정안 마련 및 공청회('14. 초) → 법률안 국회 제출('14. 6월내)

□ **구조개선 및 재도전 전담기관 설치**

○ **중진공의** 「사업전환지원센터*」를 **「구조개선·재도전 지원센터」**로 전환 ('14. 상)

* 본부 (9명) 및 31개 지역 본·지부에 지역 사업전환지원센터 운영

□ **민관 합동의 정책 플랫폼 구축**

○ 정부·유관기관·학계·업계 등 **구조개선 및 재도전 관련 전문가** 등으로 **「(가칭) 재도전 정책협의회」** 구성·운영 ('14.상)

* (참여기관) 중기청, 기재부, 금융위, 미래부, 법무부, 서울지법, 중진공, 금감원, KAMCO, 신·기보, 재도전기업인협회 등

○ 구조개선·자본시장·퇴출장벽·재창업의 **4개 분과를 운영**하고, 추진실적 점검, 민간 확산 등 **정책 추진지원**

4-2 중소기업 구조개선 전문가 육성

□ **중소기업 구조개선 전문가 교육과정 마련**

○ 경영지도사·회계사·법정관리인 양성과정* 수료자 등을 대상으로 **'구조개선 전문가과정' 개설** ('14, 2회 3개월 과정, 60명 교육)

* 법정관리기업의 관리인·감사에 필요한 기본소양 교육 (KPC, 경총)

□ **구조개선 과정에 전문가 활용 기반 구축**

○ 양성된 인력을 중심으로 **'구조개선 전문가 Pool'을 구축**하고 **외부 홍보**

○ **'구조개선 심층진단 사업**(건강관리시스템)' 등에 **전문가 우선 활용**

*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**워크아웃**(조정위원), **회생절차**(법정관리인, CRO) 등 **타 분야에서의 활용 유도**

4-3 실패 및 재도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

□ **'재도전 오디션 프로그램'** 방영을 통한 **성공사례 창출·홍보**

○ 경쟁선발(50명) → 전문교육·멘토링 → 창업아이템 평가를 통한 최종 선정(10인 내외) 후 재창업 지원

* 지상파 방송, SNS 등 파급력이 큰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국민 인식 제고

□ **'재도전 관련 국제 컨퍼런스'** (한국판 FailCon*) **개최**

* 미국 실리콘밸리 실패경험자가 모여 실패경험을 공유하고 배우자는 취지로 '09년부터 시작된 국제컨퍼런스

○ **실패기업인의 위기극복 및 재도전 성공사례 발표** 등을 통해 재도전의 **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** ('13.하)

Ⅳ. 향후 계획

□ **추진일정**

○ **'경제관계장관회의'**를 통해 **확정·발표**('13.10.30)

○ **(14년~)** (가칭) **재도전 정책협의회**를 통해 **범정부적인 협조를 유도하고, "재도전 종합대책" 사후 관리**

- 분위기 확산 및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해 홍보 강화

-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점검

□ **주요 과제별 실천계획**

정책 과제	추진일정	소관부처
1. 창업 : 실패부담 완화		
1-1. 창업자 연대보증 완화 추진	'13.하~'14.상	금융위, 중기청
2. 성장 및 회생 : 실패 최소화		
2-1. 건강진단기반 구조개선 지원	'13.하	기재부, 금융위, 중기청
2-2. 은행의 워크아웃 기업 지원 활성화	'13.하~'14.하	금융위, 법무부
2-3. 중소기업 회생제도 유연화/간소화	'14.상	법무부, 중기청
3. 퇴출 및 재창업 : 성공률 제고		
3-1. 연계형 재창업 지원시스템 도입	'14.상	미래부, 중기청
3-2. 재도전 지원 제도 확충	'13.하~'14.하	미래부, 중기청
4. 관련 인프라 확충 : 제도적 기반 마련		
4-1. 재도전 정책 추진체계 마련	'14.상	관계부처
4-2. 중소기업 구조개선 전문가 육성	'14.하	중기청
4-3. 실패 및 재도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	'13.하~'14.상	미래부, 중기청